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정 2014. 6. 16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6. 26
 개정 2018. 10. 29 전부개정 2019. 8.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이 센터는 경동대학교 메트로폴, 메디컬, 글로벌캠퍼스에 각각 위치하고 총괄센터는 메트로폴 캠퍼스에 둔다.

제3조 (업무) ① 이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생의 진로 및 심리 지원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업무(위기상담포함)
2. 학생의 자아성장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특강
3. 학생의 진로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특강
4. 학생의 정신건강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5.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6. 학생지도 및 학생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7. 학생생활 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8. 교수의 학생지도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9.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10. 각 캠퍼스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11.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이 학생지도를 수행한다.

1.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
2. 학생지도가 필요할 경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센터의 상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후 지도

제4조 (조직구성) ① 학생상담센터에는 센터장, 전문상담원(연구원), 상담교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객원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전문상담원(연구원)은 교육학, 심리학 및 상담관련 자격을 갖춘 석사 이상의 자로 한다.

④ 센터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육혁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교육혁신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규정의 개폐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상담위원회) ①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실질적인 상담의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대학 내 전임교수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위원회의 구성은 각 캠퍼스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센터장이 구성할 수 있다.

③ 상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상담윤리) ①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기록과 상담 내용은 일체 비밀을 유지한다.

② 생명윤리와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는 상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의 비밀 유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관리) 상담관련 기록은 센터에서 5년간 보관하고 이후 파기(소각 또는 쇄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을 받은 내담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9조 (재정)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으로 한다.

제10조 (회계 및 업무보고) 학생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하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전년도 회계 및 주요 업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 및 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센터장이 각 센터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① 학생상담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불만요인 파악을 위하여 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상담센터의 재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③ 평가 및 설문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